제2회 행정사 행정절차론 문제를 접하고 나서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행정사 행정절차론 담당 김 욱

강의하는 사람도 수험생 만큼이나 떨린다.

자신이 강의하는 내용이 얼마나 시험문제로 연결됐는지 노심초사한다.

그런데 웃을 수 있다. 행정절차론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행복하다.

제2회 문제는 제1회 문제와 많이 달랐다.

제1회 문제는 행정사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대체 이런 문제를 행정사 시험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는 것인가 싶었다. 행정절차법 등의 중핵을 알고 출제한 것인가 싶었다.

그러나 제2회 문제는 훌륭했다. 행정사와 관련 있는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문제구성 이었다.

1번 준사례형 문제는

수업 중 너무나 자주 언급이 되고 또 그 만큼 행정처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논점인 불이익처분의 절차에 관한 것이다.

2번, 3번, 4번 약술형 문제는 수업 중에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이다.

행정절차론에서

답안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2014.10.11

문제 1 甲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 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부분에 대하 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하였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4O점)

[1] 논점의 정리

설문의 철거명령은 불이익 처분이다.

행정절차법은 철거명령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또한 모든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유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에 대해 서술한다.

[2] 사전통지

1. 침익적 처분과 사전통지

(1) 사전통지의 의의 등

침익적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③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④ 의견제출기한 등을 원칙적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2) 사전통지의 생략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⑤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memo

수업 중에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모범예시답안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 니다.

다만, 문제1은 수업 중 제공된 자료를 철거명령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분식했 습니다.

2. 설문의 철거명령 처분과 사전통지

설문의 철거명령 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철거명령 처분의 내용 등을 甲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3] 의견청취

1. 침익적 처분과 의견청취

(1) 의 의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❷공청회 ❸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이익처분의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견청취의 방법

① 청문 -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❸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및 법인·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경우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② 공청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❷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의견청취절차의 생략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❷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설문의 철거명령 처분과 의견청취

- (1) 설문의 철거명령처분은 침익적 처분이고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따라서 개별법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 ·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최소한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4] 이유제시

1. 처분과 이유제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❶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인 경우 ❷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❸긴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문의 철거명령 처분과 이유제시

설문의 철거명령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철거명령처분의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5] 결론 - 설문의 종합적 해결

1. 설문의 철거명령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처분시 이유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2. 따라서 만약

관할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이유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철거명령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사유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memo [

문제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설명하시오.(20점)

[1]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제4조).

-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사 식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2] 개인정보유출의 통지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설명하시오.(2O점)

[1] 비공개대상정보의 의의

- 1.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공개대상정보도 인정하고 있다.
- 2. 비공개대상정보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은 제9조제1항에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❷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총8개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3]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대상정보화

공공기관은 위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4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20점)

[1] 신고의 의의

- 1.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한다.
- 2. 행정절차법은 제40조에서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3] 행정청의 필요사항 게시 등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고의 요건

-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5] 보완요구 및 반려

행정청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6] 신고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